

● 행정안전부령 제30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기술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에서 합격한 선처리물품에 별표 2에 따라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선처리물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붙인다”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합격표시는 방염대상물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제3항”을 “제1항 단서”로, “방염성능검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붙이고자 하는”을 “미리 하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기술원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의2서식의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한다.

제5조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제품검사의 합격표시 등) ① 제품검사기관은 생산제품검사에 합격한 소방용품 및 품질제품검사 적용 대상 소방용품에는 별표 11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용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를 마치기 전에 제품검사 합격표시를 미리 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수출용 소방용품 및 우수품질인증 소방용품의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표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합격표시는 소방용품에 붙이거나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제품검사 합격표시가 쉽게 닳아 없어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합격표시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를 제품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용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7호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⑤ 제품검사기관은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한다.

1. 생산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2. 품질제품검사 대상 소방용품의 경우: 별지 제19호서식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별표 2, 별표 11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 제1호의 표 다음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21번, 35번, 49번, 57번, 64번, 124번, 134번 및 135번 시설은 임대的方法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별표 14 제2호의 비고를 다음과 같이 한다.

비고

1. 시험기기 중 측정기기는 1년에 1회 이상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으로부터 교정을 받아야 한다.

2. 위 표 중 14번, 21번, 31번, 40번, 66번, 73번 및 74번 시설은 임대的方法으로 확보할 수 있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 중 “제5조제5항”을 “제5조제6항”으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9호서식 중 “제24조제6항”을 “제2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0호서식을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제5조제1항 본문 관련)

1. 방염대상물품에 붙이는 경우

방염물품의 종별	표시 양식(단위: mm)
합판, 섬유판, 소파·의자 등 합격표시를 바로 붙일 수 있는 것	
커튼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	

비고

가. 합격표시는 해당 방염대상물품에 해당하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나.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경우

표시 양식(단위: mm)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별표 11]

제품검사 합격표시(제24조제1항 관련)

1. 형식승인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품 명	표시 양식 (단위: mm)
소화기,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자동확산소화기,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투척용소화용구, 에어로졸식소화용구, 소화약제(포소화약제는 제외한다),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유도등, 비상조명등, 감지기, 발신기, 중계기, 수신기, 경종, 가스누설경보기, 공기호흡기, 공기호흡기의 충전기, 지지대,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유수제어밸브, 누전경보기, 가스관선택밸브, 방염제	
스프링클러헤드, 소화전, 소화약제(포소화약제), 송수구, 관창	
소방호스 구조대	

비고

-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표시 양식 (단위: mm)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2. 성능인증대상 소방용품

가. 증지부착, 날인 또는 각인 방식인 경우

품 명	표시 양식 (단위 : mm)
축광표지, 예비전원, 비상콘센트설비, 표시등, 소화전함,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 소방용전선, 합성수지배관, 탐지부,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 자동화재설비의 속보기,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용접식), 소방용 흡수관, 소방용 스트레이너, 소방용 압력스위치, 소방용 밸브(개폐표시형 밸브, 릴리프 밸브, 푸트 밸브)	
지시압력계, 소화기가압용 가스용기(조임금구식), 소화설비용헤드(물분무헤드, 포헤드, 분말헤드, 살수헤드), 방수구	

공기안전매트



비고

- 1) 합격표시는 해당 소방용품의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2) 합격표시가 증지류인 경우에는 은색 바탕에 검은색으로 할 수 있다.
- 3) 합격표시의 부착방법 및 위치 등에 관하여는 소방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4) 별표 7 제22호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의 합격표시 양식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나. 제품에 직접 표시 방식인 경우

표시 양식 (단위: mm)

비고: 합격표시는 표시 양식에 따른 크기 이상이어야 하며, 소방용 전선 및 배관류 등은 1미터 간격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3]

제품검사 전문기관의 검사인력 기준(제32조제1호 관련)

구 분	자 격
책임자(임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8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6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과학기술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검사요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 4명 이상)	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나.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 과학기술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의 시험·검사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비고: 위 표에서 “소방과 관련된 분야”란 전기·전자·통신, 기계·재료, 화학·화공학, 섬유, 소방학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분야를 말한다.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서식]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상 호	
	방염처리업등록번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 명	형 식	
	신 청 일	신청수량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합격표시방법	<input type="checkbox"/> 증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제품 직접 표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귀하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방염대상물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m²) 또는 중질지(80g/m²)]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의2서식]

제 호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명:

다.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라.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제품 직접 표시	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선처리물품에 대하여 방염성능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직인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의뢰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명 및 형식		
	승인(인증)번호		
	생산제품 검사 신청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신청수량		
합격표시방법	<input type="checkbox"/> 증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각인 또는 날인 <input type="checkbox"/> 제품 직접 표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생산제품 검사 합격표시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서식]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법인은 대표자)	성명(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상 호	전화번호	
	주 소		
신청제품	품 명	승인(인증)번호	
	형 식	품질제품검사 적용 구분	[] 품질제품검사(I) [] 품질제품검사(II)
	품질제품검사 적용 연월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제품완성 예정일	신청수량	
	최초 출고 예정일		
합격표시의 방법	<input type="checkbox"/> 증지 부착 <input type="checkbox"/> 날인 또는 각인 <input type="checkbox"/> 제품 직접 표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용품의 품질 제품검사 합격표시의 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대표자 및 상호)

(서명 또는 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귀하

첨부서류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제품검사 합격 전 제품에 직접 표시 하는 방법으로 합격표시를 하려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18호의2서식]

제 호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발급 확인서

1. 신청인

가. 성 명:

나. 상 호:

다. 사업장주소:

2. 합격표시 발급 신청 내용

가. 접수번호 및 접수일:

나. 품 명:

다. 승인(인증)번호 및 승인(인증)일:

라.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수량):

마. 합격표시 발급 신청수량:

3. 합격표시 발급 내용

합격표시의 종류	합격표시 발급 수량
[] 제품 직접 표시	개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소방용품의 생산제품검사 합격표시 확인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제품검사 전문기관

직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용품 및 방염선처리물품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품의 생산과정에서 제품에 직접 검사합격표시를 할 필요가 있으나 종전 규정에 따라서는 이러한 표시 방법이 허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 소방청장이 정하는 합격표시 관리체계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 검사를 마치기 전에 미리 제품에 직접 표시하는 방식으로 합격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자격요건 및 시설기준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제품검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업체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문제가 있어, 제품검사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학력요건 및 근무경험 요건을 완화하고, 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시설·장비의 일부는 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한 경우에도 해당 시설·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

●행정안전부령 제31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7년 12월 29일

행정안전부장관 인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지 제6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13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17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17호의2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20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24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25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27호의2서식 앞쪽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43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 별지 제46호서식 처리기간란 중 “즉시”를 “즉시(3근무시간 이내)”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처리기간을 ‘즉시’로 정한 민원은 원칙적으로 3근무시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는바, 화약류 수입 신고서 등 처리기간이 ‘즉시’인 민원의 신청서 등 서식에 이를 명시하여 국민들이 민원의 처리기간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행정안전부 제공>